

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심사보고서

1. 심 사 경 과 1992. 6. 16
- 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 문교사회위원회
- 나. 제출 및 회부일자
- 제출일자 : 1992년 6월 8일
 - 회부일자 : 1992년 6월 8일
- 다. 상정일자 : 제79회 임시회
-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(1992. 6. 15) 상정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)

가. 개 정 이 유

-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 새로운 지번에 의하여 변경되고.
- 공중위생법 및 음용수의 수질기준등에 관한 규칙등 상위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규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 요 골 자

-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지번변경
송정동 329 - 1번지 → 140 - 50번지로
- 음용수의 수질기준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검사항목 추가.
세레늄, 다이아지논, 파라티온, 말라티온, 페니트로티온 (1항목당
수수료 : 4,000원)
- 공중위생법 개정으로 공중이용시설 정밀검사 항목추가.
부유분진 (20,000원), 이산화탄소 (4,000원), 일산화탄소 (4,000원),
온도 (1,100원), 상대습도 (1,100원), 기류 (1,100원), 조명 (1,100원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김영만)

- 가.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의 地畵이 공단內 사무실부지로 묶여있다가 공단사무소등 5개사무실 地畵이 분할되어 地畵이 변경되고,
- 나. 음용수의 수질기준등에관한 규칙(보건사회부령 제871호 91.7.4)의 개정으로 세레늄, 다이아지논, 파라티온, 말라티온, 페니트로피온이 검사항목에 추가되어 수수료를 각각 4,000씩 받게되었으며,
- 다. 공중위생법 (90.1.13) 과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(90.12.27)의 개정으로, 공중이용시설 위생검사 항목이 추가되어 부유분진(5개소기준 20,000원), 이산화탄소(4,000원), 일산화탄소(4,000원), 온도(1,100원), 상대습도(1,100원), 기류(1,100원), 조명(1,100원)등의 수수료를 받도록하는 것은 보사부기준에 의한 전국 공통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" 없 음 "

5. 트 론 요 지 : " 없 음 "

6. 심 사 결 과 : " 원 안 가 결 "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" 없 음 "

7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가. 개정 조례안

나. 신 구 문 대 비 표